



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5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

회차	정기 13차	일자	2023.3.27 19:00	장소	총학생회실(107관 208호)
----	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--

0 성원 점검

간호대학	경영경제대학	사범대학	사회과학대학	약학대학	예술대학	의과대학
○	○	○	○	X	○	X
인문대학	자연과학대학	통일공대	동아리연합회	총학생회장	부총학생회장	계
○	○	○	○	○	○	11/13

1 단위별 보고

간호대학	-3/28(화) 교수-학생 간담회 진행 예정 -3/28(화)까지 집행부 리크루팅 진행 중
경영경제대학	-3/28(화)~29(수) 경영대 학생회장단 재선거 진행 예정
사범대학	.
사회과학대학	-집행부 리크루팅 진행 중 -4/3(월) 단대학생대표자회의 소집 예정 및 3/27(월) 소집 공고 완료
약학대학	.
예술대학	-공동구매 사업 수요조사 중 -집행위원회 신입 리크루팅 중 -다이어리 수요조사 완료 3단위 중 2단위 배부 완료
의과대학	.
인문대학	-3/27(월) 인문대 학생회 재선거 투표 방법 안내문 공고 완료 -3/28(화)~3/29(수) 인문대 학생회장단 재선거 실시 예정
자연과학대학	-3/29(수) 단학대회 -4/6(목)부터 시험기간 강의실 개방 예정 -104관 불편사항 설문조사 진행 중
통일공대	-기계공학부 및 화학신소재공학부 선거 진행 완료 -3/29(수) 19시 단대학생대표자회의 소집 예정
동아리연합회	.

2 보고 안건

<p>중앙집행위원회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육자치국: 3/29(수) 1차 학사정기협의체 예정 - 연대사업국: 각 단과대, 학과/부 분 농활 대표자 연락처 취합 중, 3/31일(금) 3월 문화콘텐츠 [April's 푸양] 진행 예정 - 일상사업국: 생활관 3, 4월 소리함 진행 중, 3/28(화) 서울동작경찰서와 함께 교내 사위실 불법카메라 전수조사 실시 예정 - 전략정책국: 다국어 번역 TF팀 활동 시작, 연대사업국과 3/31(금) 3월 문화콘텐츠 [April's 푸양] 진행 예정, 흡연구역 만족도 실태조사 3/13(월)~17(금) 온·오프라인 설문 진행 및 결과 취합 완료 - 회계사무국: 2023-1학기 학생회비 추가 납부 및 회계 내역 정리 완료
<p>산하위원회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문화위원회: 연극 제휴건 진행 예정, 축기단 세부 팀별 정기회의 지속적으로 진행 중, 3/27(월) 축기단 2차 총회의 진행 예정, 축제 부제 선정 완료 - 인권복지위원회: 3/27(월) 의혈규찰대원과 서울동작경찰서와 함께 흑석 범죄취약지역 합동 순찰 예정, 인권질의서 인문대학, 경영경제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발송 완료 및 인권질의서 선공개 카드뉴스 업로드 완료 - 장애인권위원회: 교내 엘리베이터 층별음성안내 기능/후문 배리어프리 경로/자동문 설치 현황 조사 진행 중, 인권질의서 인문대학, 경영경제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발송 완료 - 졸업준비위원회: 3/21일(화) 졸업학년대표자회의 완료 졸업앨범 관련 투표 진행 완료, 학생지원팀과 학위복 대여 관련 협의 완료 학위복 대여 사업 진행 예정
<p>기타</p>	<p>-</p>

3 논의 안건

1. 2023-1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관련 논의

- 총학생회 관련 회칙, 세칙 및 규정 제정/개정 논의

[총학생회 회계내역 마감일 관련 논의]

-총학생회 회칙상 전학대회 3일 전 안건 공고와 함께 자료집 배포

-자료집 인쇄 기간으로 인해 3/31(금)까지의 회계내역만 자료집 포함하는 것에 동의

[전학대회 안건 상정 관련 논의]

-차후 중운위가 4/3(월)인 것을 고려하면 이번 13차 중운위가 안건 상정을 위한 마지막 중운위로 예상됨

-자료집 제작을 위해 차후 중운위에서 추구 안건 상정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3/31까지 추가 안건 상정이 필요하다면 중운위 임시 회의 소집 예정

[2023-1학기 총학생회 예산안 편성 관련 논의]

-총학생회 회칙상 중운위에서 예산안 심의조정 후 전학대회 의결 진행

-통일된 항목을 비롯해 간략화하여 전학대회에서 의결 진행 예정

논의 결과 : 특이사항 없이 2023-1학기 총학생회 예산안 심의 완료

[총학생회 회칙 개정 관련 논의]

1) 제16조, 제36조, 제69조 일부 개정의 건 : 해당 조항 내 '중앙운영위원회'의 줄임말인 '중운위'를 [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] 제6장과 같이 '중앙운영위원회'로 바로잡고자 함

2) (12차 중운위 이후 재논의 안건) 제78조 2항 : 사과대에서 제61조와 통일성을 위해 개정 제안

(관련 논의)

총 : 제78조에서 의미하는 것은 학생총회가 성사되지 못했을 때의 총투표이며, 제61조는 총학생회 선거와 관련된 투표 조항이기에 별개의 조항임을 고려할 필요

사과대 : 통일성을 생각한다면 '투표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 구성의 전원으로 한다'로 제안하며 별다른 문제는 없기에 안건 상정까지는 하지 않아도 됨. 그러나 투표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 구성의 전원이기에 필요하다면 개정 요청

총 : 현재 해당 조항에 특이점은 없어보이며, 추후에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추가적으로 있을 시 개정하겠음

3) 제29조 2항, 제38조 2항, 제60조 1항, 제77조 2항, 제79조 1항 일부 개정의 건 : 띄어쓰기 및 붙여쓰기 개정의 건

*하나의 안건으로 묶어서 진행 예정

제29조 2항 : 제 19조 5항 > 제19조 5항

제38조 2항 : 중앙운영 위원 > 중앙운영위원

제60조 1항 : 11월중 > 11월 중

제77조 2항 : 우선시 된다 > 우선시된다

제79조 1항 : 선거 시행세칙 > 선거시행세칙

[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개정 관련 논의]

1) (12차 중운위 이후 재논의 안건) 5조(위상)

총 : 대부분의 단과대 세칙의 '위상'관련 조항을 보면 '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'라는 내용을 담고 있음. 그렇기에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, 사과대 세칙이 타단위 세칙과 다른 부분이기에 사과대에서 개정이

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진행하면 될 듯

사과대 : 사과대 회칙 중 총학생회 회칙을 따른 것이 많음. 구조가 비슷하나 어색하게 되어있기에 제안드린 것임
총 :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상과 대부분 단과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상이 같고 사과대가 다르기에 이번 전학대회 안건으로써는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함

2) 3조, 25조, 35조 일부 개정의 건 : 해당 조항 내 '중앙선관위'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줄임말인 '중선관위'로 바로잡고자 함

3) 8조 다 일부 개정의 건 : 해당 조항 내 '중앙비상대책부위원장'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므로 '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'으로 바로잡고자 함

4) (12차 중운위 이후 재논의 안건) 9조 다항 : '의결을 요하는 시안에 대한 의결' > '의결을 요하는 사안'으로 바로잡고자 함

5) 9조, 34조, 51조, 부칙 1조 일부 개정의 건 : 해당 조항 내 '중앙선관위원'은 옳바르지 않은 줄임말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표현하는 '중앙선거관리위원'으로 표현을 바로잡고 통일하고자 함

6) 7조 다, 32조 가 2호 : 띄어쓰기 및 붙여쓰기 개정의 건

*하나의 안건으로 묶어서 의결 진행 예정

7조 다 : 경고등 > 경고 등

32조 가 2호 : 기재 할 > 기재할

(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개정 관련 추가 질의사항)

사과대 :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8조 논의 결말?

총 : 지난 중운위에서 논의한 것처럼,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에 의거하여 중앙집행위원회 2인은 발언권 및 의결권 제한으로 개정 안건 상정 예정

[12차 중운위 재논의 안건 : 산하위원회 업무 조정의 건]

*중운위에서 아래의 의결안건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 의결하는 것은 전학대회 안건으로써 상정하여 통과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과정

(학생복지위원회 개편 관련 운영 계획안 논의)

-사과대 : 6번 사업인 '캠퍼스 외 지역 합동 순찰 운영'에 대해 금일 진행한다고 하였는데, 5월 일정은 미정인지?

총 : 아직 미정이며, 동작경찰서와 일정 조율 후 진행 예정임

(학생인권위원회 개편 관련 운영 계획안 논의)

-사과대 : 4번 예산 요청 및 확보까지 완료된 게 맞는지 질의

총 : 3차 등심위에서 관련 예산 확보 요청 및 확보 완료, 현재 시설팀과 예산 운용 방안 및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논의 예정

-사과대 : 10번 사업인 '학생 대표자 대상 인권 교육'의 경우 2개의 교육 모두 포함한 예산안인지 질의

총 : 맞음

사과대 : 강사료가 예년과 동일하게 된다면 각 교육당 30만원 이기에 한 학기만 해당되므로 수정 필요

총 : 해당 부분 반영하여 예산안 수정 예정

(기타 질의사항)

사과대 : 각 위원회 별로 규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존 규정 파기 후 새로이 제정하는 것인지 질의

총 :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아닌, 업무 확장의 건이기에 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것임

인문대 : 임기 내 사업 계획안도 추후 회의록에 첨부 예정인지 질의

총 : 해당 자료는 총학생회 운영을 위해 임기 초 내부 자체적으로 제작한 자료이며 산하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추가하여 보여드린 것

- 전학대회 자료집 4/3(월) 온라인 배포 예정
- 전학대회 불참 여부 추후 안내 및 조사 예정

4 의결 안건

1. 총학생회 회칙과 개편 시 진행할 운영 계획안을 바탕으로 총학생회 일부 산하위원회(인권복지위원회, 장애인권위원회)의 업무 조정에 동의한다.

재적단위	찬성	반대	기권	결과
11	9	0	2	가결

2. 총학생회 회칙에 의거하여 일부 산하위원회(인권복지위원회, 장애인권위원회) 업무 조정이 가결됨으로써 다음과 같이 명칭을 변경한다. 인권복지위원회 > 학생복지위원회 / 장애인권위원회 > 학생인권위원회

재적단위	찬성	반대	기권	결과
11	9	0	2	가결

3. 총학생회 회칙에 의거하여 일부 산하위원회 업무 조정 및 명칭 변경이 가결됨으로써 [#첨부1 : 학생인권위원회 운영 규정/학생복지위원회 운영 규정]과 같이 일부 산하위원회 운영 규정을 변경한다.

재적단위	찬성	반대	기권	결과
11	10	0	1	가결

4. 2023-1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안전 상정을 [#첨부2 : 2023-1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안전 목록] 과 같이 한다.

재적단위	찬성	반대	기권	결과
11	11	0	0	가결

5 기타 안건

1. 기타 건의사항

[예산자치제 관련]

-2022-2학기 예산자치제 이후 남은 잔액 : 324,171원

*학생회비 배분 후 10% 반영하여 2023학년도 예산자치제 운영 예정

[학생회비 배분 관련]

-학생회비 납부자 명단 학생처와 정리 완료, 예대의 경우 안성에 학적이 있는 학과와 과거 안성에 있다가 서울

로 온 학과의 경우, 안성으로 학생회비가 납부되었기에 안성에서 해당 금액 전달 받은 후 배부 예정
-계좌이체 한도로 인해 단위별로 나눠서 납부 예정

[주요 행사 일정]

농활 : 5/5(금)~5/8(월)

2023 LUCAUS 축제 : 5/22(월)~5/26(금)

*각 단위별 축제 진행 시, 일정 및 공간 조정 필요

[1차 학사정기협의체 관련]

3/29(수) 16:30 1차 학사정기협의체 개최 예정(약 1시간 소요 예정)

서울캠퍼스 학생 참여자 : 총학생회장단, 중앙운영위원회 1인, 중앙집행위원회 1인

서울캠퍼스 측 안건 :

- 1) D학점 의무부과제 폐지
- 2) 예비군 학습권 보장
- 3) 학기별 석차 조회 가능
- 4) 성적 이의제기 횟수 제한 완화
- 5) 포탈 내 학기별 석차 조회 가능

*중앙운영위원 중, 학사정기협의체 참석 희망하시는 위원은 총학생회장에게 개별적 연락 바람

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학생인권위원회 운영 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본 위원회는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산하기구로서 학생인권위원회(이하 위원회)라 칭하며, 모든 학생이 교내 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 보호·향상 및 실질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 및 권한)

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생인권 관련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학생인권 관련 운영에 대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
3. 학생인권 관련 교내 구성원의 인식 개선 및 향상에 관한 사항
4. 학생인권 관련 부서별 업무지원 협조와 교내 환경(시설, 시스템 등) 개선에 관한 사항
5. 학생인권 관련 운영에 필요한 기타 제반 사항

제2장 조 직

제3조(구성)

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.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총학생회의 일원으로서 회칙과 규정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.

제4조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.
- ②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와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.
- ③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세부 부서를 조직할 수 있다.

제5조(부위원장)

- ① 부위원장은 총학생회장단과 위원장의 상의 하에 선발 및 임명한다.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.
- ③ 위원장의 결위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위원)

- ① 위원은 총학생회장단과 위원장단의 상의 하에 선발 및 임명한다.
- ② 위원은 위원장이 조직한 세부 부서에 소속되어 활동한다.

제3장 기 관

제7조 (회의)

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- ① 정기회의는 학기 시작 1개월 이내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시 개최할 수 있다.

제8조 (의결)

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개정)

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시, 위원회 내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하고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4장 보 칙

제10조(운영세칙)

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.

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 운영 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본 위원회는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산하기구로서 학생복지위원회(이하 위원회)라 칭하며, 모든 학생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및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 사안의 계획, 심의, 진행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 및 권한)

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복지 관련 기본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복지 관련 시설공사, 물품 구입 등에 관한 사항
3. 복지 관련 부서별 업무지원의 협조와 조정에 관한 사항
4. 복지 관련 운영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
5. 복지 관련 운영에 필요한 기타 제반 사항

제2장 조 직

제3조(구성)

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.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총학생회의 일원으로서 회칙과 규정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.

제4조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.
- ②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와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.
- ③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세부 부서를 조직할 수 있다.

제5조(부위원장)

- ① 부위원장은 총학생회장단과 위원장의 상의 하에 선발 및 임명한다.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.
- ③ 위원장의 결위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위원)

- ① 위원은 총학생회장단과 위원장단의 상의 하에 선발 및 임명한다.
- ② 위원은 위원장이 조직한 세부 부서에 소속되어 활동한다.

제3장 기 관

제7조 (회의)

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- ① 정기회의는 학기 시작 1개월 이내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시 개최할 수 있다.

제8조 (의결)

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개정)

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시, 위원회 내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하고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4장 보 칙

제10조(운영세칙)

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.

제11조

위원회 운영을 위한 자금계좌는 위원장 또는 시설 관련 국장이 관리한다.

1. 회의 진행 방식 검토

2. 의결 안건

가. 1학기 학생회비 및 예산안 확정

나. 총학생회 일부 산하위원회 운영 규정 변경의 건

다.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 개정

- 1) 제3조, 제4조 일부 개정의 건
- 2) 제14조의2 일부 개정의 건
- 3) 제16조, 제24조, 제36조, 제59조 일부 개정의 건
- 4) 제16조, 제36조, 제69조 일부 개정의 건
- 5) 제19조, 제37조 일부 개정의 건
- 6) 제23조 일부 개정의 건
- 7) 제26조 일부 개정의 건
- 8) 제30조 일부 개정의 건
- 9) 제36조 일부 개정의 건
- 10) 제38조 일부 개정의 건
- 11) 제30조, 제41조 일부 개정의 건
- 12) 제48조 일부 개정의 건
- 13) 제49조 일부 개정의 건
- 14) 제52조 일부 개정의 건
- 15) 제55조 일부 개정의 건
- 16) 제60조 일부 개정의 건
- 17) 제72조 일부 개정의 건
- 18) 제73조 일부 개정의 건
- 19) 제78조 일부 개정의 건
- 20) 띄어쓰기 및 붙여쓰기 개정의 건

라.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개정

- 1) 3조, 25조, 35조 일부 개정의 건
- 2) 7조 일부 개정의 건
- 3) 8조 일부 개정의 건
- 4) 9조 일부 개정의 건
- 5) 9조, 34조, 51조, 부칙 1조 일부 개정의 건
- 6) 15조 일부 개정의 건
- 7) 30조 일부 개정의 건
- 8) 띄워쓰기 및 붙여쓰기 개정의 건
- 9) 조문 체계 개정의 건

3. 심의 안건

가. 학생회비 사용 내역

4. 보고 안건

가. 중앙집행위원회 업무 보고

나. 각 위원회 업무 보고